

화장품의 실제 효능 관련 실제 시험결과 광고 BUT 의약품 오인 광고라면 위법 - 광고

업무정지 3개월 제재처분: 서울행정법원 2019. 4. 12. 선고 2018구합5222 판결



1. 화장품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내용

- FDA연구소에서, AIDS(HIV-1)바이러스, 임질(Gonorrhea)균을 99%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.
- 칸디다(Candida)균, 암모니아(Ammonia), 아세트산(Acetic acid)을 99% 항균하여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합니다.
- 보습과 항균(위생), 냄새제거기능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3 IN 1 제품입니다.
- C은 균·바이러스에 확실한 항균력을
- 촉촉한 젤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케어하여
-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(Anti-microbial)하세요.
- C은 칸디다(Candida)균 99.99%, 임질(Gonorrhea)균 99.17%, AIDS(HIV-1)바이러스를 99.99% 항균합니다.
- 항균보호막이 상처로부터의 1차 감염을 예방하고, 99% 이상 입증된 항균력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을 도와줍니다.

2. 식약처 서울지방청 -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, 광고업무 3개월 정지 처분

3. 화장품 회사에서 제재처분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

4.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- 제재처분 적법

5. 판결이유

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품을 '질병을 진단, 치료, 경감, 처지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'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. 화장품 회사(원고)가 구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.

원고는,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은(silver)이 항균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등록을 거부하였고, 이 사건 광고가 이 제품에 대한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

일 뿐이므로, 이 사건 광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

이 사건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, 이 사건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이 사건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첨부: 서울행정법원 2019. 4. 12. 선고 2018구합5222 판결

표시광고분쟁, 부정경쟁, 공정거래, 조사자문, 형사/민사소송, 손해배상, 계약분쟁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